

『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영농에 종사하면서도 귀농하거나 고령 또는 여성농업인 등 임대농업기계를 운반할 수단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배달서비스를 추가하여 영농애로 및 농가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인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에 따른 용어 정비
 - 농기계 → 농업기계
-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세부 수행업무를 규정(안 제5조)
 -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농업기계 배달서비스를 추가
- 농업기계 임대·배달대상 및 기준 규정(안 제7조, 제8조)
- 농업기계 임대료 및 배달료 규정(안 제10조)

- 농업기계의 처분 규정(안 제17조)
- 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8조 ~ 제25조)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
- 예산조치 : 2018년 예산에 1.5억원 반영되었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은
 -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8조 2에 의해 추진 중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배달서비스를 추가하여 배달대상 및 기준, 배달료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